
**2026년도 과학의 날 기념
정부포상 계획(안)**
- 장관표창 (과학기술진흥 유공) -

2025. 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

I. 포상 개요

1 목적

-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자에 대한 발굴·포상을 통해 과학기술인의 자긍심·명예심을 고양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국가 과학기술 진흥에 기여

※ 제59회 과학의 날('26. 4. 21.) 전후 시상식(전수식) 개최

2 포상기준

- (수공기간) 3년 이상 과학기술분야에 공적을 쌓은 자
- (재포상 금지)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으로 공무원은 3년 이상, 일반국민은 2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다시 장관표창 수여 가능

* 이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 수여일

** 과기정통부 추천일 : 2026. 3월 중순

II. 세부추진 계획

1 규모 및 대상

- (표창 규모) 총 180명 ('25년 180명)
- (표창 대상) 과학기술 연구·행정·진흥 및 기술개발 등의 분야에서 과학기술발전에 공헌한 자로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우수기술 개발기업(연구소 포함) 연구원·엔지니어
-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의 직원, 기타 국내·외 과학기술진흥 및 문화 확산에 기여한 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속기관, 각 시·도 및 교육청 소속 과학기술담당공무원

○ (공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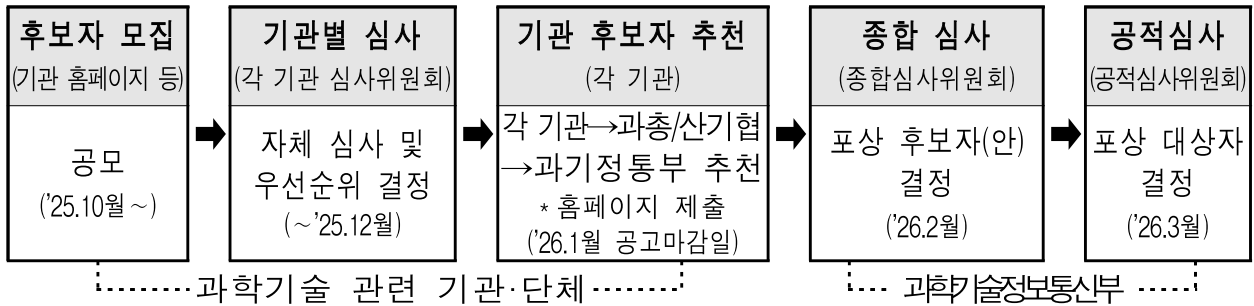
- 추천일을 기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정부포상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인 자
- 공적이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 공·사생활을 통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민원 등을 야기하여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국민)

- 추천일을 기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등의 논란이 있어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산업재해, 공정거래, 임금체불 관련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부실학회 참석, 연구비 부당사용, 부정적 연구세습 등 연구부정으로 인해 제재 중이거나 제재 예정인 자
- 상훈법 및 정부 표창 규정, 장관표창 업무지침 등에 따라 정부포상 또는 장관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3

선정절차



※ 기관 후보자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를 통해 접수·추천.
 단, 산업계의 경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기협)를 통해 접수·추천.

가. 후보자 모집 (과기정통부 및 각 기관)

-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관련 과학기술 단체 홈페이지에 게재
 -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출연(연) 등 과기정통부 유관기관
- (추천권자) 소속기관장, 과학기술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장
 - ※ 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본인을 포상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음

나. 기관별 심사(각 기관)

- 각 기관별 세부 선발기준에 따라 심사

다. 기관 후보자 추천 (각 기관→과총/산기협→과기정통부)

- 각 기관별 후보자 추천 순위를 기재하여 장관표창 접수 홈페이지로 제출 (minister.kofst.or.kr)

라. 종합심사 (종합심사위원회)

- 기관별 추천자를 대상으로 포상대상자(안) 결정을 위한 종합심사위원회 운영

마. 공적심사(과기정통부 공적심사위원회)

- 종합심사 결과를 고려하여 최종 포상대상자 선정

4

시 상

- 포상대상자 기관 통보 : '26. 4월 초
- 각 기관별 시상 : '26. 4. 21. 전후

붙임1

장관표창 자격 기준 및 추천 제한 ※과기정통부 장관표창 업무지침

구분	자격기준	추천제한
개인 (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재직기간 3년 이상 과기정통부 근속 2년 이상 (실근무기간만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기정통부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근속표창 제외) 정부포상(모범공무원 포함)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 경징계(견책·감봉)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추천가능 (단,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에 해당하면 추천불가)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인 자 기포상공적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공·사생활을 통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민원 등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개인 (일반국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분야 경력 3년 이상 (실근무기간만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기정통부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언론보도 등 논란이 있어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산업재해, 불공정거래, 임금체불 관련 등에 해당되는 자 부실학회 참석, 연구비 부당사용, 부정적 연구세습 등 연구부정으로 제재 중이거나 제재가 예정된 자 상훈법 및 정부표창규정, 장관표창 업무지침 등에 따라 정부포상 또는 장관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단체 (대외기관,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분야 2년 이상 활동 지속 국가와 사회발전, 공익제고 등 공이 큰 기관(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기정통부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동일 분야에 대해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 (공적분야가 다르더라도 수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해야 수상 가능)
단체 (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분야 우수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언론보도 등 논란이 있어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타부처 공무원의 경우, 추천일 기준 실재직기간 3년 이상이고 추천 당시 소속된 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필요로 함

① 자격기준

○ 개인표창

- (공무원) 표창추천 마감일(이하 '추천일'이라 함) 기준으로 실제직기간 3년 이상인 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근속 2년*** 이상인 자

* 실근무기간만을 대상(임용전 병역의무복무기간, 휴직기간 등은 제외)으로 함

※ 타부처 공무원의 경우, 추천일 기준 실제직기간 3년 이상이고 추천 당시 소속된 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필요로 함

- (일반국민) 추천일 기준, 해당 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

○ 단체표창

- (대외기관.단체) 추천일 기준,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그 활동을 지속하고 있고 국가, 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기관 또는 단체

- (우리 부 소속 관서) 해당 분야 우수관서

② 추천제한

- 표창권자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격기준 준수
-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은 추천 제외가 원칙이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그 소속기관에 단체표창을 수여할 수 있음
-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수여할 수 없음

◇ 추천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는 표창추천 전에 엄밀히 조사하여 부적격자(추천제한자)가 추천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 과기정통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공적심의 결과, 공적내용이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표창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각 실.국 및 소속기관에서는 포상추천 심의회(공적심의회)를 엄격하게 운영하여 적격자를 선정·추천해야 함

※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특수공적에 대하여는 표창기준 및 추천제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추천부서에서는 특수공적에 대한 장관 결재문서 사본을 첨부하여 표창대상자 추천 진행

○ 공무원 표창

- (재표창금지) 추천일 기준, 과기정통부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추천일 기준, 정부포상(모범공무원 포함)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단, 근속표창을 수여하거나 근속표창 이후 다른 장관표창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재표창 금지기간 적용 제외

-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경징계(감봉·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 중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 한하여 추천이 가능함

- 단, 징계(불문경고) 사유가「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제1~14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천 불가

<주요비위란>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제2항(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의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7.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극행정
- 7의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소극행정은 제외한다)
8.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9. 성관련 비위 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 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0.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
1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1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13.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14.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인 자
- 기포상공적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 기타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민원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 표창이 부적합한 경우(도박, 불륜, 사기, 강·절도, 상해, 갑질 등)
 - * 감사원, 검찰, 경찰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 국민 및 단체 표창
 - (재표창금지) 추천일 기준, 과기정통부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한 유공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단체표창의 경우, 유공분야가 달라도 수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해야 수상 가능
 - 공·사생활을 통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민원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단체 포함)
 - 부실학회 참석, 연구비 부당사용, 부정적 연구세습 등 연구부정으로 인하여 제재 중이거나 제재가 예정된 자
 -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에 제재 중, 제재예정인 자, 제재종료 및 제재해지는 3회 이상으로 등록된 경우 추천 제외
 - ※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제재정보는 운영지원과(인사팀)에서 일괄 조회
 - 아래에 각 내용에 해당되는 자

표창 대상	확인내용	확인방법
법인(단체) 대표 임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붙임2 제한사항 조회방법 참조
법인(단체) 대표 임원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포함) 및 그 임원	
개인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 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최근 3년간 위 법 제9조의2, 동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해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뉴스·소식>공지사항>“산업재해” 검색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List.do>)를 통하여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불량사업장 공표 목록 확인

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뉴스·소식 > 공지사항

②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검색 및 최근 3년간 게시물 확인

공지사항

국민에게 신속히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전체 | 공고 | 행사 | 입찰 | 인사 | 포상대상자공개 | 기타

전체 ▼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검색**

총 게시물 : 11건

번호	제목	담당부서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
11	[공고] 2023년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산업안전보건정책과		2023.12.29	2706
10	[공고] 2022년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산업안전보건정책과		2023.02.07	6392
9	[공고] 2021년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산업안전보건정책과		2021.12.29	10121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의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자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장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2.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 (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심결/법령 > 범위반사실조회 :

<http://www.ftc.go.kr/www/violationLawList.do?key=298>)를 통하여 확인

- 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심결/법령 > 범위반사실조회
- ② 법인명 등 검색하여 처분사항 확인(최근 3년간)

◇ 범위반사실조회

검색어 전체 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 검색

10

번호	연도	피심인명	조치유형
데이터 없음			

< >

3.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 위 법 제43조의2, 동 시행령 제23조의2의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위 법 제43조의3, 동 시행령 제23조의4의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 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http://www.moel.go.kr/info/default/list.do>)를 통하여 확인

- 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② 체불사업주 명단 조회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행정정보공개 +
- 정책실명제 +
- 청렴정책공개 +
- 공공데이터개방 +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법령정보 +
- 국고보조사업 +
- 재정정보공개 +
- 자산운용 +
- 고용노동통계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임금 등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합니다.

임금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확정, 체불총액 3천만원이상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합니다.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고용노동부는 공개기준일(매년 8월 31일)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관보,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및 그 밖에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
이번에 공개된 체불사업주는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으며, 체불사업주의 성명, 나이, 사업장명, 주소 및 소재지, 기준일 이전 3년간의 임금등 체불액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체불사업주 명단 조회

- ③ 공개명단에서 검색하여 확인(최근 3년간)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임금 등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합니다.

임금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확정, 체불총액 3천만원이상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합니다.

* 2021년 1차 명단공개 기간 : 2021.12.31.~2024.12.30.

* 2022년 1차 명단공개 기간 : 2022.10.27.~2025.10.26.

* 2023년 1차 명단공개 기간 : 2023.07.13.~2026.07.12.

* 2023년 2차 명단공개 기간 : 2024.01.04.~2027.01.03.

* 체불액 :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간 임금 등 가나다순 고액순 전체 10개씩

중 지역-전체 업종-전체 검색

	성명	나이	사업장명	주소지(사업주)	소재지(사업장)	체불액(원)